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적극행정 추진방안 | 3 |
| 적극행정 추진방안 | 3 |
| 기관장 역할·책임 강화 | 3 |
| 적극행정 지원·면책 | 3 |
|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| 3 |
|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| 3 |
|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절차 | 3 |
|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| 3 |
| 부여근거 | 3 |
| 인센티브 종류 | 4 |

적극행정 추진방안

◎ 기관장 역할 · 책임 강화
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(19년 8월)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
-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'적극행정 실행계획'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·지원
- 기관별 '적극행정 실행계획'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

◎ 적극행정 지원·면책

☞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

-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,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·감경 추진
- 각종 매뉴얼·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시 위법·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
-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행정 장려

☞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

- 적극행정 지원업무 : 인·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·자문·권고 등을 하는 것

◎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절차

1. 감사 신청(공문) - 신청기관 → 도 감사관실
2. 신청서류 검토 -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
3. 감사착수 - 업무 적정성 등 분석
4. 현장방문, 의견 청취 -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※ 필요시 전문가 자문
5. 감사의견 통보 - 도 감사관실 → 신청기관 ※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6. 조치결과 제출 - 신청기관 → 도 감사관실 ※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

◎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

☞ 부여근거

-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'19.8.6.)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따르되 그 이외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우리 군에 맞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부 근거를 마련

인센티브 종류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승진 | 성과상여금, 성과연봉 최고 등급 부여 |
| 특별승급 | 가산점 평정 시 가산점 부여 |
| 근속승진기간 단축 | 포상휴가 |
|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| 교육훈련 우선 선발 |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